

## 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코리아성장&배당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10.11
3. 주요 정정사항 :
 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 신설
 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(고재호 → 소정섭)
  - 수익률 변동성 값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2등급 → 3등급)
  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내역 반영
  - 법 개정사항 반영

**[규약]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투자 신탁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신설	①~③ (생략)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9. (생략) 10. <신설> 11. <신설> 12. <신설>	①~③ (현행 유지)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9. (현행 유지) 10 Class C-P2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 11. Class C-P1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온라인 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 12. Class C-P2e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
제10조(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신설	④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9. (생략) 10. <신설>	④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9. (현행 유지) 10. Class C-P2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

		<p>11. &lt;신설&gt; 12. &lt;신설&gt;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11. Class C-P1e 수익증권 &lt;신설 2018. 10. 11&gt; 12. Class C-P2e 수익증권 &lt;신설 2018. 10. 11&gt;</p> <p>②~⑤ (현행 유지)</p>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클래스 신설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&lt;신설&gt; 11. &lt;신설&gt; 12. &lt;신설&gt;</p>	<p>①~② (현행 유지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 (현행 유지)</p> <p>10. Class C-P2 수익증권 &lt;신설 2018. 10. 11&gt;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32 <b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</b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11. Class C-P1e 수익증권 &lt;신설 2018. 10. 11&gt;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32 <b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b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12. Class C-P2e 수익증권 &lt;신설 2018. 10. 11&gt;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32 <b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b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문구 정정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①~② (현행 유지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8. 10. 11&gt;</p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)	문구 정정	<p>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</p>

거래)			정한 바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< 개정 2018. 10. 11>
부칙 (2018년 10월 11일 개정)	-	-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<b>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b>			
<b>[1] 투자전략</b>			
4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, 결산 갱신	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고재호	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소정섭
5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(세전 기준))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<b>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</b>			
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수익률 변동성 값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5.32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.54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
<b>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</b>			
<b>[1] 과세</b>			
-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 내용 추가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 - <신설>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 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2, C-P2e 가입자에 한함) 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	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

기구의 명칭			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변경에 따른 연혁 추가	-	2018.10.11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 신설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(고재호 → 소정섭) - 수익률 변동성 값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2등급 → 3등급) 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내역 반영 - 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 인력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, 결산 갱신	가.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 : 고재호	가.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 : 소정섭
	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전문인력 : 고재호 (2018.04.16 ~ 현재)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전문인력 : 고재호 (2018.04.16 ~ 2018.10.10) 소정섭 (2018.10.11 ~ 현재)
6.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그림> - <신설>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그림>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 추가
		나. 종류형 구조 - <신설>	나. 종류형 구조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
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대상	법 개정사항 반영	나. 투자제한 (7) 투자한도 초과 -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6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	나. 투자제한 (7) 투자한도 초과 -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6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
10. 집합투자	연환산 표준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기구의 투자 위험	편차 수치 반영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5.32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.54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클래스 신설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<신설>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클래스 신설, 결산 갱신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신설>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
	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신설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C-P2, C-P1e, C-P2e 클래스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 내용 추가	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 (생략) (5) <신설>	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 (현행 유지)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2, C-P2e 가입자에 한함)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일자 업데이트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일자로 업데이트
		라. 운용자산규모	최근일자로 업데이트
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라.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- - 않습니다. -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)	라.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- - 않습니다. -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<b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b>			
<b>[1] 투자전략</b>			
4. 운용전문 인력	부책임운용 전문인력 변 경, 결산 갱 신	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고재호	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소정섭
5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(세전 기준))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<b>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</b>			
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수익률 변동 성 값 반영 에 따른 투 자위험등급 변경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 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 준편차가 15.32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 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 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(높 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 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 준편차가 12.54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 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 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3등급 (다 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
<b>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</b>			
<b>[1] 과세</b>			
-	클래스 신설 에 따른 과 세 내용 추 가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 - <신설>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 입자에 한함) 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 P2, C-P2e 가입자에 한함) 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 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 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 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 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 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끝>.